

社團法人韓國酪農肥育協會定款

會員과의紐帶를 더욱 공공히하고協會의 참여를 돋기위해 이달호에 협회 기본법이라고 할수 있는定款을
제재하여會員自身의協會에積極的인參與와結束으로協會가本然의任務를爲해無限히發展할수 있도록
바라는 바이다.

定 款

第1章 總 則

第1條(名称) 本會의 名称은 社團法人 韓國酪農肥
育協會라 한다.

第2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
고 必要한 地域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3條(目的) 本會는 酪農 및 肥育牛產業의 劃期的
發展과 會員의 親睦 및 共同利益과 權益을
圖謀하며 牧畜業의 所得增大와 輸出入 代替
產業으로서의 基盤을 自主的으로 造成하여
牧畜業의健全한 發展을 成就, 國民 經濟의
向上과 國家의 畜產振興施策에 積極 寄与함
을 目的으로 한다.

第2章 事 業

第4條(事業) 本會는 다음 事業을 遂行하므로서 前
條의 本會目的을 達成코자 한다.

1. 牧畜業의 經營 및 技術等의 啓蒙, 調查
指導普及宣傳 및 資料刊行物과 會誌의發
刊事業
2. 肉質과 乳質改善事業
3. 草地改良 造成等 國土利用度 向上事業
4. 肉価와 乳價安定 및 牧畜用飼料 安定化
를 위한 事業
5. 種畜 및 家畜精液, 飼料, 牧草種子, 機資材
輸出入 幹施事業
6. 牧畜用飼料 및 機資材의 共同購買 幹旋
事業
7. 畜產物의 共同販売와 輸出入 幹旋事業
8. 施設 및 運營資金의 幹旋事業
9. 國際機構와의 交流 및 相互協助

10. 會員相互間의 意思調整 親睦 福利增進
事業
11. 牧畜農家の 海外旅行 推薦事業
12. 其他 本會目的達成에 必要한一切의 附
帶事業

第3章 會 員

第5條(資格 및 加入節次) 本會의 會員은 酪農 또는
肥育農家로서 本會의 目的에 賛同하고 所定의 人會手續을 畢한 者로서 理事會의 承認
을 받은 者로 한다.

第6條(會員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本會 定款의
모든 條項에 規制된 事項과 理事會와 總會에
서 決議된 諸般事項을 遵守할 義務를 갖는다.

第7條(會員의 權利) 本會의 會員은 任員의 選舉權
被選舉權을 갖는다.

第8條(入會金, 會費) 本會의 入會金 및 會費는 定
額制로 하며 그 金額은 總會에서 定한다.

第9條(褒賞) 協會에 功獻한 業務가 顯著한 會員
또는 個人에 對하여 褒賞할 수 있다.

第10條(制裁 및 除名)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경우
에 理事會의 決議로서 制裁 또는 除名할 수
있다.

1. 會費의 末納會員
2. 本會에 對한 不正行爲會員
3. 本會의 名譽를 毁損시킨 會員
4. 本會 事業을妨害하거나 損害를 끼친 會員
5. 其他 會員業務를 履行치 않은 會員

第11條(脫退) ① 會員은 다음各号의 事由로 本會
를 脫退하는 것으로 한다.

1. 會員資格의喪失
 2. 解散, 破産, 禁治產 및 除名
 3. 脫退 申請書의 提出
- ② 第1項 第3号의 规定에 依한 脱退申請書는 当該 地域別 支會長에게 提出한다.

第12條(納入金의 不返還) 會員이 納入한 入會金 會費 其他 納入金은 第11條의 规定에 依하여 除名 또는 脱退할 때에 이를 返還하지 않는 다.

第4章 任員 및 職員

第13條(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2名以内
3. 理事 30名以内 (會長, 副會長包含)
4. 常勤理事 1名
5. 監事 2名

第14條(任員의 選任) 理事 監事는 會員中에서 總會에서 選任하고 會長, 副會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하되 常勤理事는 會員外에서 會長이 提請하여 總會에서 選任한다.

第15條(任員의 職務)

-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統理한다.
-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理事會 決議에 따라 미리 定한 順位에 依하여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③. 常勤理事는 會長 및 副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命에 따라 日常事務를 處理 管掌한다.
- ④. 監事는 本會의 財產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查하고 그 結果를 總會와 理事會에 報告한다.
- ⑤.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 运營하며 會務를 執行한다.

第16條(任職員의報酬) ① 常勤理事 및 職員의 給與規程은 理事會에서 制定한다.

- ② 常勤理事 以外의 任員과 顧問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17條(任員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는 2年으로 한다.

- ② 補闕選任된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하고 任期滿了時에는 後任任員이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遂行한다.

第18條(任員報告) 前第17條에 따라 任員의 改選, 補選으로 任員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이를 主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9條(顧問) 本會運營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顧問을 둘 수 있다.

第20條(任員의 解任) 本會의 任員은 다음의 경우 總會의 議決에 따라 解任할 수 있다.

1. 本會의 名譽를 毀損하였을 때
2. 本會에 對하여 不正行爲가 있을 때

第21條(職員의 任免) 本會職員은 會長이 任免하고 理事會에 이를 報告한다.

第5章 會議

第22條(會議) 本會에 總會와 理事會를 둔다.

第23條(總會)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하 고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 1月中에 이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決議 또는 代議員 3分의 1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24條(總會의 構成) ① 總會는 地域別支會 會員總會에서 選任되는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② 地域別支會의 代議員은 当該支會의 會長이 된다.
③ 代議員은 100名 以内로 하고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25條(總會 召集方法) 總會는 開會 10日前에 會長이 會議目的 事項 및 議決事項을 通知하여 이를 召集한다.

第26條(總會 議決事項)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定款의 制定 및 變更
2. 任員의 選任 및 解任
3. 收支豫算書, 決算書 및 事業計劃書
4. 基本財產의 造成 및 處分
5. 入會金 및 會費의 賦課 및 徵收方法
6. 解散 및 이에 따르는 財產處分
7. 其他 理事會가 附議한 重要事項 및 定款의 定한 事項

第27條(總會 議決定足數) 總會는 代議員 過半數以

上의 出席으로 成立되어 出席會員數의 過半數 賛同으로 附議案件을 議決하되 可否同數 일 때에는 議長이 이를 定한다.

다만, 定款의 變更 및 解散決議는 代議員 3分의 2以上 出席과 出席會員 3分의 2以上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28條(代理權行使) 總會에서 代理人으로 議決權을 行使하고자 하는 때에는 本會 會長이 미리 發給한 委任狀을 總會開會 前에 總會에 提出하여 代理人으로서 代理權을 認証받아야 한다. 다만, 1人 1票의 代理權行事를 할 수 있다.

第29條(總會 會議錄) 總會 案件의 討議經過와 結果를 要約하여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이 指名한 2人 以上의 出席會員의 署名을 받아 議事錄의 内容을 確認케 하고 이를 다음 總會에 報告해야 한다.

第6章 理事會

第30條(理事會構成)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서 構成하고 監事는 理事會에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31條(理事會召集)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3分의 1 以上 理事의 要請이 있을 때에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32條(理事會의 議決決定足數) 理事會는 在籍理事數의 過半數 出席으로서 開議하여 出席理事數의 過半數로서 議決하고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33條(理事會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附議事項
2. 本會의 業務 事業等 運營에 関한 事項
3. 會員의 入會審查決議事項
4. 財產, 會計, 紙與에 関한 規程과 其他諸規程의 制定 및 變更
5. 豐算의 科目 流用
6. 顧問 추대
7. 會員의 制裁 및 除名

8. 其他 定款에 規定된 事項 및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34條(書面決議) 會長은 附議事項 内容이 輕微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緊急을 要하는 事項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議決할 수 있다.

第7章 財產 및 會計

第35條(基本財產 및 收入源) 本會의 財政收入은 入會金, 會費 및 其他收入으로 하고 다음의 財產은 基本財產으로 한다.

1. 入會金

2. 理事會 議決로서 指定된 財產

第36條(財產의 管理) 本會의 財產은 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會長이 管理한다.

第37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를 適用한다.

第38條(豫算 및 決算) 本會의 事業計劃書, 收支豫算書 및 決算書는 每會計年度 終了後 30日以内에 總會의 議決을 거치고 主務部長官에게 報告한다.

第8章 解 散

第39條(解散) 本會의 解散과 이에 따르는 財產處분은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9章 附 則

第40條(細則) 本定款에 規定되지 않은 사항은 理事會에서 定하여 施行한다.

第41條(施行) 本定款은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42條(經過措置)

- ① 本協會는 舊 韓國酪農協會와 舊 韓國企業牧場協會의 業務와 清算殘餘財產을 引受한다.
- ② 舊 韓國酪農協會와 舊 韓國企業 牧場協會는 '80年 12月 31日까지 殘務整理 및 清算을 完了한다.
- ③ 本協會業務는 '81年 1月 1日부터 開始한다.